

일부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인식, 필요 및 요구도

이현정¹, 곽지원², 이동하², 이현희², 정혜미², 주수연², 성미경³

¹박윤규 치과의원, ²마산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³마산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직업 면허는 직업영역에 대한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격보유자만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며 의료관련 분야의 직업 면허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 자격 중에서도 전문교육의 국가시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자격이다¹⁾.

치과위생사는 국가자격의 직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시행령 2조에 의거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²⁾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한 것이지만 8가지 업무와 30가지 행위분류로 나열함으로써 행위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기사법에 위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³⁾ 박⁴⁾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과 의사의 연령과 지역,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수에 따라 법으로 정한 업무와 상관없이 주관적 관점으로 허용과 불가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라도 간호조무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영역이 있었다. 이는 향후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의 직제 간 수행업무에서 인식의 전환은 물론 각각의 업무를 재논의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제도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관하여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신속성 및 효율성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우선하여 고려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치과위생사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과위생사 관련 법제도가 치과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치과위생사

접수일: 2018년 4월 6일 최종수정일: 2018년 4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6일

교신저자: 성미경, (512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Tel: 055-230-1282, Fax: 055-230-0144

E-mail: mgseong@masan.ac.kr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이 지속됨으로써 심리적 박탈감과 업무만족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대국민 치과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⁶⁾.

이를 위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최 등³⁾의 임상치과 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과 김 등⁷⁾의 치과 위생사들의 제도와 업무관련 의료법 개정을 위한 요구도와 형과 장⁸⁾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견해와 김 등⁹⁾의 언어분석기법을 이용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없어 객관적 근거자료의 필요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법률개정에 필요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 확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경남 소재의 1차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181명, 2·3차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78명,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2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처리에 부적합한 9부를 제외한 26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김 등⁷⁾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도 5문항, 의료(기사)법에 대한 필요도 4문항, 의료(기사)법에 대한 요구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9$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19.0 K Program for Windows(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도 비교는 chi-square 분석을 하였고, 의료(기사)법을 아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비교,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연구대상자의 의료(기사)법 필요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요구도 비교는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Scheffe's로 사후검정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5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많았고,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고, 근무지 유형은 치과의원이, 업무유형은 진료보조 업무가 가장 많았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인식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는 Table 2와 같다. 의료(기사)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적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의료(기사)법 교육을 이수한 적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모른다가 68명, 안다가 69명이었고, 보통이다가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의료(기사)법 이수 여부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유형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year)	≤25	105(40.1)
	26–30	91(34.7)
	31–35	36(13.7)
	≥36	30(11.5)
Working career	≤3 years	102(38.9)
	3–5 years	49(18.7)
	6–10 years	75(28.6)
	≥11 years	36(13.7)
Marital status	Single	184(70.2)
	Married	78(29.8)
Academic background	College	210(80.2)
	University	35(13.4)
	≥ Graduate school	17(6.5)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239(91.2)
	Etc.	23(8.8)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73(27.9)
	Dental clinic	177(67.6)
	Education institution	12(4.6)
	Prevention	50(19.1)
	Patient care	42(16.0)
Type of duty position	Care coordination	130(49.6)
	Hospital management	32(12.2)
	Etc.	8(3.1)

by descriptive

Table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도 (계속)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Education can be the presence or absence		Medical device legal contents		
		No(N=160)	Yes(N=102)	don't know(N=68)	usually(N=125)	Know(N=69)
Age(year)	≤25 (N=105)	56(53.3)	49(46.7)	30(28.6)	48(45.7)	27(25.7)
	26–30 (N=91)	63(69.2)	28(30.8)	24(26.4)	44(48.4)	23(25.2)
	31–35 (N=36)	21(58.3)	15(41.7)	6(16.7)	20(55.6)	10(27.8)
	≥36 (N=30)	20(66.7)	10(33.3)	8(26.7)	13(43.3)	9(30.0)
	(p-value*)	5,701(0.127)		2,402(0.879)		
Working career	≤3 years (N=102)	55(53.9)	47(46.1)	26(25.5)	46(45.1)	30(29.4)
	3–5 years (N=49)	31(63.3)	18(36.7)	13(26.5)	19(38.8)	17(34.7)
	6–10 years (N=75)	51(68.0)	24(32.0)	20(26.7)	42(56.0)	13(17.3)
	≥11 years (N=36)	23(63.9)	13(36.1)	9(25.0)	18(50.0)	9(25.0)
	(p-value*)	3,927(0.269)		6,126(0.409)		
Marital status	Single (N=184)	107(58.2)	77(41.8)	47(25.6)	86(46.7)	51(27.7)
	Married (N=78)	53(67.9)	25(32.1)	21(26.9)	39(50.0)	18(23.1)
	(p-value*)	2,211(0.137)		0,610(0.737)		

Unit: N(%)

Table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도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Education can be the presence or absence					Medical device legal contents	
		Education can be the presence or absence		Medical device legal contents				
		No (N=160)	Yes (N=102)	don't know (N=68)	usually (N=125)	Know (N=69)		
Academic background	College (N=210)	130(61.9)	80(38.1)	57(27.1)	105(50.0)	48(22.9)		
	University (N=35)	20(57.1)	15(42.9)	8(22.9)	14(40.0)	13(37.1)		
	≥Graduate school (N=17)	10(58.8)	7(41.2)	3(17.6)	6(35.3)	8(47.1)		
	(p-value*)	0.325(0.850)			7.201(0.126)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N=239)	146(61.1)	93(38.9)	62(25.9)	114(47.7)	63(26.4)		
	Etc. (N=23)	14(60.9)	9(39.1)	6(26.1)	11(47.8)	6(26.1)		
	(p-value*)	0.000(0.984)			0.001(1.000)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N=73)	35(47.9)	38(52.1)	18(24.7)	39(53.4)	16(21.9)		
	Dental clinic (N=177)	119(67.2)	58(32.8)	47(26.6)	82(46.3)	48(27.1)		
	Education institution (N=12)	6(50.0)	6(50.0)	3(25.0)	4(33.3)	5(41.7)		
	(p-value*)	8.734(0.013)*			2.838(0.592)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N=50)	36(72.0)	14(28.0)	9(18.0)	20(40.0)	21(42.0)		
	Patient care (N=42)	27(64.3)	15(35.7)	11(26.2)	20(47.6)	11(26.2)		
	Care coordination (N=130)	72(55.4)	58(44.6)	38(29.2)	63(48.5)	29(22.3)		
	Hospital management (N=32)	21(65.6)	11(34.4)	8(25.0)	19(59.4)	5(15.6)		
	Etc. (N=8)	4(50.0)	4(50.0)	2(25.0)	3(37.5)	3(37.5)		
(p-value*)	5.183(0.267)			10.293(0.231)				

*by Fisher's exact chi-square statistics *p<.05

3.3.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아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의료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의 대상자를 제외한 “보통과 안다”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는 Table 3과 같다. 의료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 19명 중 “현 의료(기사)법은 치과 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평균 2.76으로 나타났고,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 법적 문제의 책임관계가 명확하다”는 평균 2.56, “타 직종에 대한 의료행위가 명확하다”는 평균 2.58로 매우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무지역”이었고,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 법적 문제의 책임관계가 명확하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무기간”과 “업무유형”이었다. “타 직종에 대한 의료행위가 명확하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결혼유무”와 “최종학력”, “업무유형”이었다.

3.4.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필요도

“의료(기사)법에 대한 내용을 보통 / 안다”의 대상자를 제외한 “모른다”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필요도는 Table 4와 같다.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대상자 68명 중 “국가 간 이동을 통제, 관리를 위해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에 대한 필요도 분석 결과는 31-35세가 가장 높았고, 6-10년의 근무기간이 필요도가 높았다. 기혼일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필요도가 높았고, 근무지역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필요도가 높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병원경영관리업무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았지만,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아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Unit: Mean ± S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Unclear business	Clear accountability	Clear Medical act
Age(year)	≤25 (N=75)	2.76±0.88	2.55±0.64	2.61±0.72
	26-30 (N=67)	2.40±0.89	2.51±0.84	2.45±0.72
	31-35 (N=30)	2.47±0.57	2.53±0.68	2.63±0.62
	≥36 (N=22)	2.64±1.00	2.77±0.92	2.82±0.91
	F(p-value [*])	2.384(0.071)	0.707(0.549)	1.629(0.184)
Working career	≤3 years (N=76)	2.74±0.92	2.51±0.70 ^{ab}	2.57±0.79
	3-5 years (N=36)	2.53±0.74	2.28±0.57 ^a	2.53±0.56
	6-10 years (N=55)	2.47±0.79	2.69±0.88 ^{ab}	2.60±0.74
	≥11 years (N=27)	2.41±0.84	2.78±0.75 ^b	2.67±0.78
	F(p-value [*])	1.609(0.189)	3.181(0.025) [*]	0.208(0.891)
Marital status	Single (N=137)	2.58±0.86	2.50±0.73	2.51±0.70
	Married (N=57)	2.58±0.80	2.68±0.81	2.75±0.79
	t(p-value [*])	0.017(0.986)	1.523(0.129)	2.132(0.034) [*]
Academic background	College (N=153)	2.63±0.81	2.59±0.71	2.67±0.72 ^a
	University (N=27)	2.37±0.97	2.52±0.89	2.33±0.62 ^{ab}
	≥Graduate school (N=14)	2.36±0.93	2.29±0.91	2.14±0.86 ^b
	F(p-value [*])	1.646(0.196)	1.072(0.344)	5.342(0.006) ^{**}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N=177)	2.64±0.82	2.55±0.68	2.56±0.71
	Etc. (N=17)	1.94±0.90	2.59±1.33	2.76±0.90
	t(p-value [*])	3.340(0.001) ^{***}	-0.106(0.917)	-1.076(0.283)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N=55)	2.56±0.79	2.60±0.76	2.53±0.79
	Dental clinic (N=130)	2.58±0.86	2.54±0.74	2.61±0.71
	Education institution (N=9)	2.56±1.01	2.56±1.01	2.56±0.73
	F(p-value [*])	0.015(0.985)	0.127(0.880)	0.238(0.788)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N=41)	2.76±0.86	2.51±0.60 ^a
Patient care (N=31)		2.39±0.76	2.61±0.72 ^a	2.68±0.75 ^{ab}
Care coordination (N=92)		2.57±0.89	2.45±0.73 ^a	2.41±0.73 ^a
Hospital management (N=24)		2.46±0.66	2.83±0.96 ^{ab}	2.75±0.79 ^{ab}
Etc. (N=6)		3.00±0.89	3.17±0.98 ^b	3.00±0.63 ^b
F(p-value [*])		1.365(0.248)	2.434(0.049) [*]	2.688(0.033) [*]
Total (N=194)		2.58±0.84	2.56±0.76	2.58±0.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a,b,c}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e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p<.05 ^{**}p<.01

Table 4.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필요도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eed for Legal System
Age(year)	≤ 25 (N=30)	3.30±0.92
	26-30 (N=24)	3.29±1.23
	31-35 (N=6)	3.50±0.84
	≥ 36 (N=8)	3.00±1.07
	F(p-value [*])	0.281(0.839)
Working career	≤ 3 years (N=26)	3.35±0.89
	3-5 years (N=13)	2.92±1.12
	6-10 years (N=20)	3.60±1.10
	≥ 11 years (N=9)	2.89±1.05
	F(p-value [*])	1.667(0.183)
Marital status	Single (N=47)	3.26±1.03
	Married (N=21)	3.33±1.07
	t(p-value [*])	0.285(0.776)
Academic background	College (N=57)	3.28±0.98
	University (N=8)	3.25±1.49
	≥ Graduate school (N=3)	3.33±1.16
	F(p-value [*])	0.007(0.993)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N=62)	3.24±1.04
	Etc. (N=6)	3.67±1.03
	t(p-value [*])	-0.960(0.341)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N=18)	3.28±1.02
	Dental clinic (N=47)	3.28±1.06
	Education institution (N=3)	3.33±1.16
	F(p-value [*])	0.004(0.996)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N=9)	3.56±0.88
	Patient care (N=11)	2.64±0.81
	Care coordination (N=38)	3.26±1.06
	Hospital management (N=8)	4.00±0.93
	Etc. (N=2)	3.00±1.41
	F(p-value [*])	2.422(0.0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b,c}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e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3.5.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필요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필요도는 Table 5와 같다. 모든 대상자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학력과 의료기관 종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사)법 개정 시 촉진요인 중 “타 단체의 협조”와 “의료법적 문제 해결”은 최종학력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6.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비교는 Table 6과 같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는 평균 3.89였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평균 4.14,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는 평균 4.19,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평균 4.26, “법으로 치위생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

Table 5.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필요도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ecessity of revision	Institutional arrangement	Promoting factor				
				agreement (N=22)	Cooperation (N=62)	Negotiation (N=30)	Legal (N=127)	education (N=186)
Age (year)	≤ 25 (N=105)	105(100.0)	4.23±0.75	11(50.0)	28(45.2)	11(36.7)	46(36.2)	75(44.6)
	26-30 (N=91)	91(100.0)	4.03±0.90	7(31.8)	20(32.2)	14(46.7)	45(35.4)	55(32.7)
	31-35 (N=36)	36(100.0)	3.89±1.09	1(4.5)	7(11.3)	2(6.7)	18(14.2)	21(12.5)
	≥ 36 (N=30)	30(100.0)	4.30±0.70	3(13.6)	7(11.3)	3(10.0)	18(14.2)	17(10.1)
	F, 5(p-value ^a)		2,214(0.087)	2,140(0.528)	0,966(0.819)	2,481(0.480)	2,576(0.466)	4,353(0.225)
Working career	≤ 3 years (N=102)	102(100.0)	4.20±0.78	9(40.9)	29(46.8)	12(40.0)	47(37.1)	67(39.9)
	3-5 years (N=49)	49(100.0)	4.02±0.75	5(22.7)	9(14.5)	5(16.7)	24(18.9)	32(19.0)
	6-10 years (N=75)	75(100.0)	3.99±1.05	6(27.3)	18(29.0)	9(30.0)	36(28.3)	47(28.0)
	≥ 11 years (N=36)	36(100.0)	4.33±0.72	2(9.1)	6(9.7)	4(13.3)	20(15.7)	22(13.1)
	F, 5(p-value ^a)		1,851(0.138)	0,609(0.915)	2,837(0.417)	0,153(1.000)	0,987(0.817)	0,399(0.951)
Marital status	Single (N=184)	184(100.0)	4.16±0.83	15(68.2)	43(69.4)	23(76.7)	90(70.9)	122(72.6)
	Married (N=78)	78(100.0)	4.04±0.92	7(31.8)	19(30.6)	7(23.3)	37(29.1)	46(27.4)
	t, 5(p-value ^a)		-0.987(0.325)	0.48(0.811)	0.30(0.875)	0.672(0.526)	0.48(0.893)	1.279(0.264)
Academic background	College (N=210)	210(100.0)	4.08±0.84 ^a	16(72.7)	41(66.1)	19(63.3)	102(80.3)	139(82.7)
	University (N=35)	35(100.0)	4.09±0.92 ^a	4(18.2)	14(22.6)	6(20.0)	15(11.8)	20(11.9)
	≥ Graduate school (N=17)	17(100.0)	4.71±0.77 ^b	2(9.1)	7(11.3)	5(16.7)	10(7.9)	9(5.4)
	F, 5(p-value ^a)		4,316(0.014) [*]	1,389(0.572)	9,694(0.007) ^{**}	7,174(0.020) [*]	1,172(0.596)	2,168(0.366)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N=239)	239(100.0)	4.13±0.82	18(81.8)	53(85.5)	29(96.7)	115(90.6)	153(91.1)
	Etc. (N=23)	23(100.0)	4.09±1.24	4(18.2)	9(14.5)	1(3.3)	12(9.4)	15(8.9)
	t, 5(p-value ^a)		0,146(0.885)	2,652(0.113)	3,339(0.076)	1,254(0.490)	0,138(0.828)	0,013(1.000)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N=73)	73(100.0)	4.08±0.92 ^a	5(22.7)	19(30.6)	10(33.3)	35(27.6)	50(29.8)
	Dental clinic (N=177)	177(100.0)	4.10±0.84 ^a	17(77.3)	39(62.9)	19(63.3)	85(66.9)	111(66.1)
	Education institution (N=12)	12(100.0)	4.75±0.45 ^b	0(0.00)	4(6.5)	1(3.3)	7(5.5)	7(4.1)
	F, 5(p-value ^a)		3,438(0.034) [*]	0,880(0.657)	1,340(0.546)	0,559(0.824)	0,513(0.795)	1,001(0.639)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N=50)	50(100.0)	4.00±0.86	3(13.6)	9(14.5)	6(20.0)	32(25.2)	26(15.5)
	Patient care (N=42)	42(100.0)	4.00±0.96	4(18.2)	10(16.1)	3(10.0)	17(13.4)	25(14.9)
	Care coordination (N=130)	130(100.0)	4.18±0.83	12(54.5)	36(58.1)	18(60.0)	62(48.8)	86(51.2)
	Hospital management (N=32)	32(100.0)	4.09±0.86	2(9.1)	5(8.1)	2(6.7)	12(9.4)	25(14.9)
	Etc. (N=8)	8(100.0)	4.75±0.46	1(4.5)	2(3.2)	1(3.3)	4(3.1)	6(3.6)
	F, 5(p-value ^a)		1,697(0.151)	1,276(0.869)	3,126(0.541)	2,236(0.672)	7,484(0.109)	6,813(0.142)

*by Fisher's exact chi-square statistic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a,b,c}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e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p<.05 ^{**}p<.01

울할 수 있을 것이다”는 4.14,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증진될 것이다”는 평균 4.23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법적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에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은 연령과 업무 내용이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은 경력과 최종학력, 근무하는 의료기관, 업무내용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

다”는 연령과 근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최종학력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으로 치위생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경력과 최종학력, 업무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증진될 것이다”는 최종학력, 근무지역, 업무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Unit: Mean ± S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Legal liability	Expansion of work	Legal protection	Institutional settlement	Strengthen discipline	Phase enhancement
Age(year)	≤ 25 (N=105)	3.76±0.64 ^a	4.14±0.75	4.11±0.66	4.19±0.62	4.15±0.62	4.27±0.70
	26-30 (N=91)	4.05±0.64 ^b	4.11±0.74	4.18±0.69	4.29±0.62	4.10±0.70	4.14±0.74
	31-35 (N=36)	3.81±0.67 ^{ab}	4.19±0.71	4.31±0.58	4.33±0.63	4.17±0.70	4.39±0.73
	≥ 36 (N=30)	3.90±0.61 ^{ab}	4.17±0.70	4.33±0.55	4.30±0.60	4.20±0.76	4.13±0.90
	F(p-value [*])	3.609(0.014) [*]	0.130(0.942)	1.364(0.254)	0.698(0.554)	0.222(0.881)	1.223(0.302)
Working career	≤ 3 years (N=102)	3.75±0.65	4.15±0.72 ^a	4.15±0.65 ^{ab}	4.25±0.62	4.16±0.67 ^a	4.24±0.75
	3-5 years (N=49)	3.98±0.48	3.88±0.86 ^b	4.02±0.60 ^a	4.12±0.70	3.92±0.61 ^a	4.08±0.70
	6-10 years (N=75)	4.00±0.68	4.19±0.69 ^a	4.25±0.72 ^{ab}	4.25±0.57	4.13±0.70 ^a	4.21±0.72
	≥ 11 years (N=36)	3.89±0.65	4.39±0.55 ^a	4.39±0.49 ^b	4.47±0.56	4.42±0.60 ^b	4.42±0.81
	F(p-value [*])	2.528(0.058)	3.705(0.012) [*]	2.680(0.047) [*]	2.271(0.081)	3.968(0.009) ^{**}	1.430(0.234)
Marital status	Single (N=184)	3.84±0.66	4.10±0.75	4.12±0.66	4.25±0.61	4.12±0.65	4.21±0.73
	Married (N=78)	3.99±0.61	4.23±0.68	4.35±0.60	4.27±0.64	4.19±0.72	4.26±0.78
	t(p-value [*])	1.705(0.090)	1.291(0.198)	2.614(0.009)	0.230(0.819)	0.768(0.444)	0.443(0.658)
Academic background	College (N=210)	3.85±0.63	4.13±0.72 ^{ab}	4.14±0.63 ^a	4.20±0.61 ^a	4.08±0.68 ^a	4.20±0.74 ^a
	University (N=35)	4.06±0.73	4.00±0.84 ^a	4.20±0.72 ^a	4.37±0.65 ^a	4.26±0.61 ^a	4.14±0.81 ^a
	≥ Graduate school (N=17)	3.94±0.75	4.59±0.51 ^b	4.71±0.47 ^b	4.71±0.47 ^b	4.65±0.49 ^b	4.76±0.44 ^b
	F(p-value [*])	1.558(0.213)	3.942(0.021) [*]	6.166(0.002) ^{**}	6.204(0.002) ^{**}	6.444(0.002) ^{**}	5.031(0.007) ^{**}
Type of work area	Gyeongsangnam-do (N=239)	3.87±0.65	4.13±0.72	4.18±0.64	4.25±0.61	4.13±0.67	4.23±0.73
	Etc. (N=23)	4.09±0.60	4.22±0.90	4.26±0.75	4.30±0.70	4.22±0.74	4.22±0.90
	t(p-value [*])	-1.558(0.120)	-0.431(0.670)	-0.571(0.569)	-0.394(0.694)	-0.569(0.570)	0.053(0.958)
Type of work place	Dental hospital (N=73)	3.85±0.68	4.32±0.62 ^{ab}	4.23±0.64 ^a	4.25±0.62	4.15±0.62	4.32±0.62 ^a
	Dental clinic (N=177)	3.90±0.65	4.04±0.76 ^a	4.14±0.64 ^a	4.24±0.60	4.11±0.69	4.15±0.78 ^a
	Education institution (N=12)	3.92±0.52	4.58±0.52 ^b	4.67±0.65 ^b	4.58±0.79	4.58±0.67	4.75±0.62 ^b
	F(p-value [*])	0.160(0.852)	6.195(0.002) ^{**}	4.115(0.017) [*]	1.780(0.171)	2.872(0.058)	4.503(0.012) [*]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N=50)	3.82±0.69 ^a	3.86±0.88 ^a	4.18±0.52 ^a	4.28±0.57	3.96±0.73 ^a	4.00±0.78 ^a
	Patient care (N=42)	3.76±0.62 ^a	4.29±0.71 ^{ab}	4.21±0.68 ^a	4.29±0.67	4.10±0.66 ^a	4.19±0.83 ^{ab}
	Care coordination (N=130)	3.85±0.66 ^a	4.12±0.69 ^{ab}	4.08±0.68 ^a	4.20±0.62	4.13±0.63 ^a	4.22±0.69 ^{ab}
	Hospital management (N=32)	4.25±0.44 ^b	4.34±0.55 ^b	4.41±0.56 ^a	4.28±0.58	4.34±0.70 ^a	4.47±0.67 ^b
	Etc. (N=8)	4.13±0.64 ^{ab}	4.75±0.46 ^c	4.88±0.35 ^b	4.75±0.71	4.88±0.35 ^b	5.00±0.00 ^c
	F, (p-value [*])	3.536(0.008) ^{**}	4.524(0.002) ^{**}	4.188(0.003) ^{**}	1.613(0.171)	4.286(0.002) ^{**}	4.445(0.002) ^{**}
Total (N=262)		3.89±0.65	4.14±0.73	4.19±0.65	4.26±0.62	4.14±0.67	4.23±0.7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a,b,c}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p<.05 ^{**}p<.01

4. 고찰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때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구강보건전문가이며 전문직업인이다¹⁰⁾. 전문직업인은 자신의 직업을 자율적이고 독립적 권위를 가지는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일에 대한 소명의식, 공익을 추구하는 봉사심,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수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¹¹⁾. 현대의 구강진료제도는 포

괄적, 사람중심, 예방지향이라는 질병 치료위주에서 1차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로 변화되어 왔고,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과 여러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병 예방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¹²⁾.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진료보조 업무에서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 직종 간 업무영역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마찰

을 빚고 있다¹³⁾. 또한 법적 업무와 실제적 업무와의 차이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행정처분 사례가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¹⁴⁻¹⁷⁾ 선진 외국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구강보건협력인력으로서의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와 업무범위에 대한 고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40.1%, 임상경력은 3년 이하가 38.9%, 결혼유무는 미혼이 70.2%,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80.2%, 근무지는 치과의원에 67.6%, 업무유형은 진료보조 업무가 49.6%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사)법의 인지 정도는 교육이수 38.9%에 비해 미이수 61.1%로 더 많았으며, 의료(기사)법 교육을 이수한 적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모른다가 26.0%, 안다가 26.3%이었고, 보통이다가 47.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의료(기사)법 이수 여부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등³⁾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기사법을 정확히 인지한 것은 학교교육에서 의료관계법을 배운지 얼마되지 않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김 등⁷⁾의 미이수 52.1%, 내용인지는 보통이다 56.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원 근무자에 비해 병원근무자와의 이수 여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병원근무자의 필요에 의한 관련법인지로 해석이 되며 향후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해 치과위생사와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보통과 안다”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 비교는 의료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 19명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 법적 문제의 책임관계, 타 직종에 대한 의료행위의 명확 모두 평균 2점대로 매우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불분명하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무지역”이었고,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 법적 문제의 책임관계가 명확하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무기간”과 “업무유형”이었다. “타 직종에 대한 의료행위가 명확하다”에서는 “결혼유무”와 “최종학력”, “업무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업무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직역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실제업무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생각되며, 경력이 길고 진료 외 기타업무를 할수록 법적 책임관계를 잘 아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혼일수록,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진료 외 기타업무를 할수록 타 직종에 대한 의료행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양한 인간관계, 지식, 경험 등이 생활의 지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대상자 68명 중 기혼일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필요도가 높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병원경영관리 업무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았지만,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필요도 비교는 모든 대상자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김 등⁷⁾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학력과 의료기관 종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사)법 개정시 촉진요인 중 “타 단체의 협조”와 “의료법적 문제 해결”은 최종학력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촉진요인에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에 가장 많은 응답자(186명)가 있어 김 등⁷⁾의 60.6%로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나 타 단체와의 협조를 해야 할 필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에서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요구가 커지는 요즘 행정처분이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¹⁴⁻¹⁷⁾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해석된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전문 치과 위생사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 등⁷⁾의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은 것과는 상반되지만 응답자의 연령, 경력, 학력 등이 비슷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차이와 요구되는 각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의료(기사)법 개정의 요구도는 다양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경력, 최종학력, 업무내용에서 가장 많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업무내용에서도 해당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중 일부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일지라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위험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⁹⁾는 협회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같은 견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치과위생사 전체 의견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위상강화와 업무 제한을 해소하고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의료인화 추진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의 직역 간 업무행위를 통틀어 재해석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 소재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262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일부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은 25세 이하가 40.1%,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38.9%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70.2%,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80.2%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경상남도가 91.2%, 근무지 유형은 치과의원이 67.6%, 업무유형은 진료보조 업무가 46.9%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인식도 비교는 교육이수 여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었고,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아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현재 의료(기사)법은 “업무내용이 분명하다”는 근무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책임관계가 명확하다”는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행위가 명확하다”는 결혼유무와 최종학력, 업무내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사)법을 모르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법적 체계의 필요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의 필요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대상자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필요성”은 최종학력과 의료기관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사)법 개정 시 촉진요인 중 “타 단체의 협조”와 “의료법적 문제 해결”은 최종학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의료법이 개정되면 “법적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에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은 연령과 업무내용이었고, “업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은 경력과 최종학력, 근무하는 의료기관, 업무내용이었다. “법적보호가 가능하다”는 연령과 근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제도 정착에도

움이 될 것이다”는 최종학력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경력과 최종학력, 업무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위상이 증진될 것이다”는 최종학력, 근무 지역, 업무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와 필요도를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업무권한의 확장과 법적 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마산대학교 캡스톤디자인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것입니다.

참고문헌

1. Lee YG, Jeong SH, Park BS. A study on the medical guidance of medical articles.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research report, 2010. 2-75.
2. Korea Laws. Health & 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Internet]. [cited 2017 June 08].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3. Choi YR, Seo HY, Ryu EJ, Choi EM. Dental Hygienist'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 Dent Hyg Sci. 2016;16(6):495-501.
4. Park JH.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master's thesis] Cheonan: Dankook University; 2007. [Korean]
5. Kim HN. Issues of legal amendments regarding medical article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3;11(3):91-96.
6.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Dental Hygienist members guidance on medical law revision on health promotion printing business. 2017. 1. 10.
7. Kim SI, Jun MK, Lee SM.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J Korean Soc Hyg. 2016;16(5):677-685.
8. Hyeong JH, Jang YJ.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 Korean Soc Hyg. 2017;17(6):1013-24.
9. Kim SY, Yoon GR, Kang DH, Kim SJ, Lee SE, Jang SB, Hong SM, Hwang JH, Kim NH. Analysis of trade newspaper related to dental hygienist as healthcare professionals using language analysis technique: using R program. J Korean Soc Hyg. 2017;17(5):921-30.
10. Lee SJ, Han K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Hyg. 2012;36(3):238-248.
11. Kang EJ. Pharmacists' professionalism and its related factor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Korean]
12. Jeong WG, Son AR, Jeong HR, Kim JY, Ha JE, Hee SH, Kim NH.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J Korean Soc Hyg. 2006;6(4):403-417.
13. Cheon DJ, Lee KW,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the roles of the dental assistant nurse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1):98-106.
14. Yoon NN, Lee MJ, Seong MG. Analysis of the perception degree on dental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xperience, psychological status and preventive education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017;5(1):13-21.
15. Oh JH, Kwon JS, Ahn HJ, Kang JK, Choi J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Korean J Oral Medicine. 2007;32(1):9-33.

16. Lee SM, Lim MH, Han MS. Th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8;8(4):241–246.
17. Kang BW And 24 others. *Medical Laws for Dental Hygienist*. komoonsa, 2015. 251–253.
18.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Hyg*. 2008;8(3):161–175.
19.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Legal consultation opinion on dental hygienist medical care assistants and surgery assistants*, 2017.04.21.

ABSTRACT

Awareness, need and demand for the amendment of medical device law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me dental hygienists

Hyeon-Jeong Lee¹, Ji-Won Kwak², Dong-Ha Lee², Hyeon-Hee Lee²,
Hae-Mi Jeong², Soo-Yeon Joo², Mi-Gyung Seong³

¹Park Yun-gu Dental clinic,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tudent, Masan University,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rom June 1, 2017 to August 25, 2017 for the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Busan and Gyeongnam area,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the purpose of revision of the relating laws from the analysis of their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such laws through 262 subjects' questionnaire. Its analysis of their perspectives are as follows.

1.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that 40.1% of them are under 25, and their working period was under three years with the 38.9%, and as for their marital status, 70.2% were single, the final education of 80.2% were associated degrees. Their working areas are center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ith 91.2%, the workplace type is for the dental clinic with 80.2%.

2. The comparison of the view point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iffered only whether or not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bjects understanding the detail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aying “the current law has clear job description” depending on the working area or “the job duty is definite” depending on the job experience and job details. As for those saying “the job duty is definite”,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marital status, final education and work detai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racteristics from findings of the necessity of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subjects not understanding the medical(technician) law.

3.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necessity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jects accepted the necessity of the medical law revision including the dental hygienist in the medical person. The “necessity of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syste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and medical institution type. Among the triggering factors in its amendment, th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operation of other organizations” and “solution of medical law problems” only in the final education.

4.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the need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traits related to the age and job details showed “Legal responsibility would be increased” when the medical law is revised, in case that “it will help broaden the job

extension”, the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working institution, and job details. “Legal protection is possib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the age group and working area, and “it help the system settlement” showed in the fin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job details that “I can regulate the education and field practice”, and the same in “my status will be improved”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work area, and job detail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dental health service as suggested from the demand and necessity toward the medical(technician) Law by the dental hygienists

Key Words: Awareness, Dental hygienists, Demand, Medical device law, Need